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창원)2019누111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구단355 판결
변론 종결	2019. 10. 16.
판결 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91,033,1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원고의 감사였던 B이 2018. 10. 4.경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내이사 C는 암 투병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C는 2018. 10. 26. 사망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B이 감사직을 사임하고 2019. 3. 4.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그 취임 후 2주 만인 2019. 3. 18.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위 사유가 없어진 시점으로 볼 수 있는 2019. 3. 4.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내이사 C가 이 사건 처분서 송달 전후로 암 투병을 하다 2018. 10. 26.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로 남아 있던 제소기간(68일) 내에 원고가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따른 대표자 유고 시의 직무대행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일시 이사 선임 결정을 받아 그 일시 이사로 하여금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해태로 인한 것일 뿐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안좌진

판사 서범욱